

「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고 구미시 정보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·보완하여 구미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- 상위법에 따라 용어 변경(안 제1조 ~ 제20조)
 - (당초) 지역정보화 → (변경) 정보화
 - (당초) 시행계획 → (변경) 실행계획
-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기 삭제 및 상위계획 변경(안 제4조)
- 정보화책임관 변경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전자정부법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고 구미시 정보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책임관 변경 등 개정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